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145
----------	-----

제안연월일 : 2023. 06.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동굴 보유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한국동굴연합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의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법적 근거 없는 임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법정 협의체로 변경·구성하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개요
 - 설립목적: 동굴 보유 지자체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동굴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
 - 설립일자: 2000. 6. 23.(초대 의장시군: 삼척시, 현재 의장시군 영월군)
 - 회원기관: 9개 지자체(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경상북도 울진군, 충청북도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내용: 회원 간 업무협의 및 문화재청, 도 등 기관 정보네트워크 구축, 동굴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회원 공동 발전사업 (소식지 발간 및 공동 홍보물 제작 등), 국제동굴연합(ISCA) 가입 등

-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회의의 구성)의 행정협회의 설립 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법적 근거 없는 임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이 불가하며, 예산의 체계적 관리 미흡 및 동굴 보유 지자체 간 교육·협력 활동 제약 발생
 - 대 책: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회의의 구성)의 행정협회의 설립 절차 이행으로 임의 협의체를 법정 협의체로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취
-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규약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동굴연합 협의회에 소속된 전국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동굴연합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합 명칭은 「한국동굴연합 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 한국동굴연합 협의회는 동굴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경상북도 울진군, 충청북도 단양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회원의 범위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소재지)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사무실은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 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조직)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임원은 회장과 감사로 구성된다.

1. 회장 : 회장은 한국동굴연합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출하며 회장이 속한 지역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단, 초대 회장은 창립총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차기 회장단에서 동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선출한다.
3. 감사 : 감사는 직전회장으로 선출하여 사무국의 모든 재정 운영에 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4. 회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동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5.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한국동굴연합 협의회는 설립 취지를 살리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회원간의 업무협의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국내외 동굴 관련 학술연구 및 탐방
3. 기타 회원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 및 의사결정) 총회는 매년 개최하되 「국내동굴연합회의」와 「심포지엄」

형태로 병행 운영할 수 있다.

1. 총회 : 신규 회원의 가입 승인, 주요 사업의 추진, 정관의 개정 등 한국동굴연합 협회회의의 주요 사안을 토의·의결한다.
2. 실무협의 : 한국동굴연합 협회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해당 지자체의 동굴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회장이 소속된 지자체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자문기관) 한국동굴연합 협회회의가 속한 지자체 외에 민간이나 법인으로 구성된 국내 동굴연합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필요 시 별도 자문기관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한국동굴연합 협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특별회원으로 위촉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회의) 한국동굴연합 협회회의 회의는 「국내동굴연합회의」와 「심포지엄」 형태로 병행 운영할 수 있고, 주요 회의안건은 신규 회원의 가입 승인, 주요사업의 추진, 정관의 개정 등 협회회의의 주요 사안을 토의·의결한다.

1.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필요시 심포지엄 형태로 병행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회원의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동굴 학자 또는 각 회원별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실무회의로 한다.
3. 회의안건은 회의개최 2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4. 심포지엄 : 각 회원의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동굴 학자 또는 각 회원별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실무회의로 운영한다.

제10조(사무국) 한국동굴연합 협회회의의 사무국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총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소속한 실무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1조(재정) 한국동굴연합 협회회의의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산및회계) 예산은 한국동굴연합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원과 운영비로 구성되며 회장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매년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정기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 부담)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국동굴연합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규약 개정)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보칙) 한국동굴연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동굴연합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인수인계) 회장은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사항의 성실히행의무) 한국동굴연합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회원) 동굴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외에 동굴관련 법인 또는 사업체 운영 기관은 한국동굴연합 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제7조에 따라 개최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운영규칙) 본 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